

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6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2월 23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한계 및 편성 재량권 등을 감안하고, 후견제도의 목적과 취지 및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제도 개선 요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사업의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며, 일부 조문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일부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나.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- 다. 후견 비용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라. 시장의 후견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- 마.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등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본문 중 “후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”를 “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”로 수정한다.

안 제6조 조문명 중 “심판 청구”를 “후견심판 청구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1조 ~ 제4조(생략)	제1조 ~ 제4조(현행과 같음)
<p>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<u>후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.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에 따른 <u>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</u> 4. ~ 5. (생략) 	<p>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<u>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(제정안과 같음) 2.(제정안과 같음) 3.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<u>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</u> 4. ~ 5. (제정안과 같음)
제6조(<u>심판 청구</u>)(생략)	제6조(<u>후견심판 청구</u>)(제정안과 같음)
제7조 ~ 제8조(생략)	제7조 ~ 제8조(제정안과 같음)
(부칙)(생략)	(부칙) (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성년후견”이란 성인이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할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후견을 말한다.
2. “미성년후견”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, 친권의 상실, 일시 정지,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후견을 말한다.
3. “공공후견인”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(이하 “후견 비용”이라 한다) 지원을 홍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) ① 시장은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을

수립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후견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

1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
2.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
4.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
5. 그 밖에 시장이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후견심판 청구) 시장은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 추진) 시장은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
2. 미성년후견 인식 개선 사업
3.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